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
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9월 3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해당하는
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등록 시 사용료를
일부 감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
- 나.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
조성하고 이에 준한 공공서비스 감면 혜택 부여

2. 주요 내용

- 가.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동정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전화 : 3396-4684, FAX : 3396-8613, E-mail : kds0415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첨 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·제139조·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·제156조·제161조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문화·체육시설내”를 “문화·체육시설 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9조 단서 중 “타시·구민”을 “타 시·구민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사용료의10%”를 “사용료의 100분의 10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나목,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“1~4일전”을 각각 “1~4일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후단 중 “100분의15”를 “100분의 15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80범위”를 “80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

제12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
제12조제4항 중 “제11조 제2항” 을 “제11조제2항” 으로 하며, 제12조제5항 중 “20범위내” 를 “20 범위” 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필요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· 제139조 · 제144조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, 「도서관법」 제27조 · 제29조 및 「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·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문화활동 및 건강 ·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 ·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관리 및 운영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문화 · 체육시설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, 필요할 경우 3년이내의 <u>범위 안</u>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 · 체육시설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· 제156조 · 제161조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4조(관리 및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별</u></p> <p>위-----</p> <p>-.</p> <p>제5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문화 · 체</u></p> <p><u>육시설✓내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승인을 얻어야 하며,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.</p> <p>⑤ (생 략)</p> <p>제6조(운영지원)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화·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<u>범위 안</u>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9조(문화·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·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의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,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문화·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이용기회 부여는 중구민을 <u>타시·구민</u>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의2(사용료의 반환)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사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운영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범위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문화·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 타✓ <u>시·구민</u>----- ---.</p> <p>제11조의2(사용료의 반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유로 인한 취소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와 위약금(총 사용료의 10%)을 반환 할 수 있다.</p> <p>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나열된 태풍, 홍수, 화재, 감염병 등과 같은 ‘자연재난’ 또는 ‘사회재난’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강습 및 이용 신청 취소</p> <p> 가. (생 략)</p> <p> 나. 사용예정일 <u>1~4일전</u> : 위약금 공제 후 반환</p> <p> 다. (생 략)</p> <p>2.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강습 및 이용 취소</p> <p> 가. (생 략)</p> <p> 나. 사용예정일 <u>1~4일전</u> : 전액 반환 및 위약금 배상</p> <p> 다. (생 략)</p> <p>3.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대관 취소</p> <p> 가. (생 략)</p> <p> 나. 사용예정일 <u>1~4일전</u> : 위약</p>	<p>-----</p> <p>----- 사용료의 <u>✓ 100분의 10</u> 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 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 나. ----- <u>1~4일✓ 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 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 나. ----- <u>1~4일✓ 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 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 나. ----- <u>1~4일✓ 전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금 공제 후 반환</p> <p>다. (생 략)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자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<u>100분의15</u>를 곱하여 산정한 자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나열된 태풍, 홍수, 화재, 감염병 등과 같은 '자연 재난' 또는 '사회재난'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.</p>	<p>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✓15----- -----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</p>
<p>제12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) ①</p> <p>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에는 사용료의 <u>100분의 80범위</u>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p>	<p>제12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) ①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 80✓ 범위-----.</u></p> <p>③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✓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✓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✓ 제8조의3 ----- ----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✓ 제52조제1항 ----- ----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	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✓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✓ 제17조의2제1항 ----- ----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	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✓ 제2조제5호----- ----

현 행	개 정 안
따른 역류지출신 포로 가족 <u><신 설></u>	-----
9. ~ 12. (생 약)	9.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<u>제11조 제2항</u> 에서 정한 사용료 중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.	10. ~ 13. (현행 제9호부터 제12호 까지와 같음) ④ ----- ----- <u>제11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.
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<u>20범위내</u> 에서 감면할 수 있다.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	⑤ ----- ----- <u>20✓ 범위</u> ----- -----. 제15조(시행규칙) ----- <u>필 요한</u> -----.